

제 496 호

1975.4.18.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편집 : 문화정보실장 조용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 시보

차례

## ○ 조례

제 942 호	서울특별시 학생수련원 설치조례	3
제 943 호	서울특별시 청탁금지법 위반 처벌 조례	4

## ○ 규칙

제 1460 호	서울특별시 윤전면 허접수제 행정 처분규칙 등 개정규칙	5
제 1461 호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 · 사업지구내환지 지사축량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7

## ○ 고시

제 45 호	서울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적승인	19
제 46 호	도시계획시설(광장 및 도로) 지적일부 변경승인	20
제 47 호	도시계획시설(공동구) 결정	21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제 48 호	도시계획시설(시내버스주차장)	
	결정 및 지지승인	22
제 49 호	서울특별시 사료성분 등록고시	23

◎ 공 고

제 80 호	직인개각공고	24
제 81 호	영동제2지구(추가)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인가	25
제 5 호	(양서출장소공고) : 공인개각공고	26

◎ 사 릉 ..... 27

조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학생수현원 설치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학점생

1975년 4월 18일

**○ 서울특별시조례제 942호**

서울특별시학생수현원설치조례

제 1 조 ( 목적 ) 서울특별시교원 및 학생의 정신수련과 학생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도서벽지 학생 및 해외동포 학생의 서울방문시의 수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산하에 서울특별시 학생수현원(이하 수현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 2 조 ( 위치 ) 수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번지의 23호에 두고, 야외수련장을 다음과 같이 둔다.

1. 대성리야외수련장 : 경기도 가평군 대성면 대성리 584번지

2. 천마산 유우스호스텔 : 경기도 양주군 · 아금면 · 호평리 산 1번지의 1호

제 3 조 ( 원장 ) 수현원에 원장을 둔다  
원장은 장학관, 교육연구관 또는 지

방식기관으로 보한다.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원무를 관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 한다. 원장 유파시에는 교육과장이 원장을 대리한다.

제 4 조 ( 정원 ) 원장이 의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정한다.

제 5 조 ( 하부조직 ) 수현원에 사무과와 교학과를 둔다.

사무과장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보하고, 교학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 연구관으로 보하되 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 6 조 ( 경비부담 ) 수현원의 재회에 의한 수련자의 숙식비는 무료로 한다. 다만, 타기관과 단체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의 숙식비는 별표에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실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 7 조 ( 시행규칙 )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구 분	식비 (1식당)	숙박비 (1박당)
국민학생	100 원	100 원
중고생	150 원	150 원
교원	200 원	200 원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성곽복원위원회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준 인

1975년 4월 18일

### ○ 서울특별시조례 제 943 호

#### 서울특별시성곽복원위원회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의 (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 서울성곽복원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사회 각층의 여론을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기하고자 서울특별시 성곽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2 조 (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성곽의 원형복원에 관한 일
2. 성곽주위, 조경 녹지, 도로배설,

기타 환경조성에 관한 일

3. 성곽복원과 도시계획과의 관련문제에 관한 일

4. 성곽복원에 관한 사회 각종의 여론반영

5. 기타사항이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일

제 3 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 1 부시장이 된다.

③위원은 사제의 권위있는 사학가, 언론인, 문화재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 조경전문가, 건축 및 토목전문가 기타 사회 이론지도층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 4 조 (위원장등의 직체)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p>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p>
<p>제 5 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p>	<p>제 10 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규칙으로 정한다.</p>
<p>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1차 위원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부 칙</p>
<p>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p>	<p>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제 6 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p>	<p>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생활복원사업이 완성될 때까지 적용한다.</p>
<p>② 간사는 문화홍보실장, 서기는 문화 계장이 된다.</p>	<p>규 칙</p>
<p>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p>	<p>서울특별시 운전면허점수제 행정처분 규칙 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p>
<p>제 7 조 (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서울특별시장 구자준 [인]</p>
<p>제 8 조 (자료제출의 요구)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성명을 요구할 수 있다.</p>	<p>1975. 4. 18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460호</p>
<p>제 9 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에마다</p>	<p>서울특별시 운전면허점수제 행정처분 규칙 중 개정규칙</p>

서울특별시운전면허점수제행정처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중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축  
결출두지서서를 교부받은 운전자"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교부받고 납  
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자와 축결  
심판의 출두지시서를 교부받은자"로  
한다.

제 7 조 제 1 항 중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을 삭제하고 동조제 2 항  
및 제 3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제 4 항 및 제 5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처벌지 경찰서장은 범칙금 납부통  
고서를 교부받은 범칙자의 주소지가  
판내일 때에는 5일간, 판외일 때에는  
7일간 보관하되 범칙금 납부월증을  
제시하여 면허증을 훈부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관기간 만료일 일  
지체없이 동사실을 보관물을 첨부하  
여 시장에게 보고 또는 타 시도로  
이첩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전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위반별 배  
점수 및 행정처분 내용을 면허대

장《점사본》에 기재하고 보관물이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관리에 철저  
를 기하여야 한다.

④다른 시도에서 이첩된 사항은 전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며  
다른시도로 이첩할 사항은 단속지  
경찰서장이 주소지 경찰서장에게  
직송하여야 한다.

⑤다른 시도에서 이첩된 통고처분에  
대하여는 주소지 경찰서장은 통고  
처분 불이행자가 출두하였을 때에  
는 범칙금 납부통고서 이면의 준  
수사한증 출두일지를 연기하여 기입  
하고 수리와 동시에 즉시에 회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기일 연기사유  
는 반드시 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범칙금 납부통고서 이면에는 판인을  
찍어 교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중 "범칙금영수증서 또는"을 삭제한다.  
제 9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9 조(보관물반환) ①행정처분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법규위반 운전자가 벌  
과금을 납부하고 그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자체없이 보관  
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처분 만료일 12:00 이후에 반환한다.

②법칙자가 납기내 법칙금을 납부하고 납부증을 제시한 때에는 경찰 본서에서 당해 면허증을 환부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환지지시 측량대행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5. 4. 18

##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461 호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환지지시 측량대행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환지지시 측량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심의회구성) ①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환지지시 측량 대행업자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구획정리사무에 경험이 충부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임명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간사를 위촉 임명한다.

제 3 조 (심의회운영) ① 환지지시 측량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의 지정 및 취소와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한다.

② 대행업자의 지정은 조례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신사기준에 따라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지정한다.  
③ 기타 운영에 관한 심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4 조 (대행업자 지정신청)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행업자 지정신청서 (별지 제 1 호식식)
2.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자본인인 경우 회적 또는 주민등록등본)
3. 대행업자 대표 및 측량사의 기력서와 신원증명서

34-8 제496호

시

1975.4.18

<p>4. 축량사의 차격증사본 및 경력 증명</p> <p>5.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자연인경우 재산증명)</p> <p>6. 대행업자 사무실시설 및 설비내용과 영업감찰증명</p> <p>7. 재정보증서 (조례제 5조)</p> <p>제 5조 (대행업자와수) 대행업자의 수 및 선정방법 등은 심의회에서 결정한다.</p> <p>제 6조 (지정서교부) ① 대행업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시장과 환지지시 축량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계약체결 및 조례제 5조 제 2항의 보증금을 예치하였을 때는 별지제 2호 서식에의한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한다.</p> <p>제 7조 (축량의신청 및 처리) ① 대행업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별지제 3호 서식에의한 환지 지시축량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제 4호 서식에의한 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일이내에 별지제 5호 서식에의한 환지지시 축량필증 및 별지제 6호 서식에의한 환지지시 축량도를 첨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p>	<p>③ 대행업자가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제 7호 서식에의한 접수증에 축량예정일시 및 환지지시 축량필증 교부일자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④ 환지지시 축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시장이 교부한 공사·완료지역표시 1/5,000도면에 의거 건축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축량사는 축량도면에 기명날인후 대행업자 명의로 환지지시 축량필증을 발급한다.</p> <p>제 8조 (축량방법) ① 축량은 도근점 또는 중심점을 기준으로하여 실시되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타의 축량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는 축량실시전에 환지예정도(원도) 및 환지예정지 조사에의하여 중요기재내용(연장, 거리, 면적 및 기타사항)을 확인한 후 등사한다 다만, 등사를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환지예정도 및 기타공부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 조정을 받은 후 그지시에 따라 처리</p>
---	---

<p>하여야 한다.</p> <p>④ 환료된 축량업무 교부원안은 지구별 및 월별로 편월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p> <p>⑤ 대행업자의 취소 및 기타 사유로 동업무를 대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때에는 대행업자는 결정의 원인 및 기타 관계서류 일체를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p> <p>제 9조 (수수료징수 및 환불) ① 대행업자는 조례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신청서 접수시에 징수할 수 있다.</p> <p>② 축량신청후 신청인의 사정에 의하여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거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축량업무의 사무준비 완료시(전 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등사완료시를 말한다) 수수료의 50% 환불</li> <li>2. 축량업무의 사무준비 이전일시 수수료의 100% 환불</li> </ol> <p>제 10조 (업무보고) ① 대행업자는 별지 제 8호 서식에 의한 축량대행업무 실적보고서를 매월 5일 전 전월분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기타 업무수행중 필요한 사항을 수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 11조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업자의 관계업무를 수시 감사 시킬 수 있다.</p> <p>② 대행업자는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p> <p>제 12조 (행정지원) 대행업자는 대행업무 개시전에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자예정도(열람도) 비치</li> <li>2. 대행업자 직인조각 및 시장에 등록</li> <li>3. 대행업자 사무실표시판 설치(별지 제 9호 서식)</li> <li>4. 대행업자 지정서 및 축량사의 자격증 제시</li> <li>5. 수수료징수 및 환불표 제시</li> </ol> <p>제 13조 (기타)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대행업무 수행상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지시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척</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	---

34-10 제 496호

시 보

1975.4.18

별지 제 1호 서식

서울특별시 환자 지시 측량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

영업 소재지 :

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 성명 :

자본금 : 재산평가액 원

불입자본액 원

종업원 : 측 량 명

사용인 명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지구 환자 지시 측량 대행업자로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19

신청인 (인)

첨부 : 일견서류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제 496 호

시

보

1975.4.18 34-11

별지 제 2호 서식

서울특별시 환경거시 측량 대행업자 지정서

상호 또는 명칭 :

영업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자 19 년 월 일  
유효기간 :

자 19 년 월 일

귀하를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지구 환경거시 측량대행자로  
지정함 .

19 . . .

서 울 특 별 시 장

(별지 뒷면)

1. 이 지정서는 다른 사람에 대여할 수 없다.
2. 이 지정서를 오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24시간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이 지정서는 사무실 정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34-12 채 496 호

## 시 보

1975.4.18

**별지 제 3호 서식**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에 의하여 위와같이 편지지시 측량을  
신청하오니 측량후 도면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 . .

신 청인 (61)

서울특별시 환경부지사 축량대행업자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구수	수수료액	비고
1. 신청서	1월~20월	평당 2,000 원	연수기
※ 이 신청서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21월~50월	1,000 원	"
	50월 초과	5,000 원	"

별지 제4호 서식

죽량신청서처의부

34-14 제 486호

시 보

1975.4.18

별지 제5호 서식

환지지시 측량필증

서울특별시 환지지시 측량 대행업자

( )

19

수신 :

제목 : 환지지시 측량필증 교부

1. 74. . . . 자 귀하께서 신청하신 토지구획정리 구획내  
동 번지의 (체비지) 호의 환지지시 측량도면을 별첨과  
같이 교부하며,
2. 환지지시의 재측량은 인력부족등으로 재시행기 어려우니 경계  
말뚝을 철저히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도면 1부 끝.

서울특별시 환지지시 측량 대행업자

( )

제 496 호

시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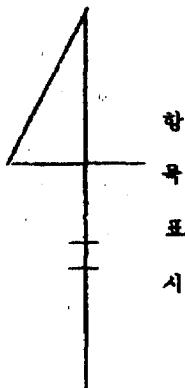
1975.4.18 34-15

<별지 제 6 호서식>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토지 구획정리 지구 구획내

동 번지

호 환지 지시 측량도



측량일자 서기 1975년 월 일 측체

1,200/1

측량식

③

- |                      |
|----------------------|
| 1. 사용목적              |
| 2. 건축가능지역여부 판단       |
| 가. 건축가능지역 ( ).       |
| 나. 건축불가능지역 ( ).      |
| 3. 본 도면은 측량에 사용치 못함. |

34-16 제 496 호

시 보

1975.4.18

<별지 제 7 호 서식>

축 량 신 청 접 수 증

신청위치 : 구 동 번지 호

( 지구 )

신청인 : 구 동 번지 호

성 명 :

필 수 :

필

수수료 :

원

용 도 :

축량예정일시 : 19

환지지시축량 : 19  
필증교부일자

위와 같이 축량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97

서울특별시 환지지사 축량대행자 대표

⑪

( 36 절 )

제 496 호

시 보

1975.4.18 34-17

<별지 제 8호 서식>

업무 실적 보고서

수신: 서울특별시장 귀하

참조: 구회장리 1·2과장

발신: 서울특별시 대행

기간: 자 19 . . .

축량자 대표

④ 자 19 . . .

1. 내 역

지 구 범	구 分	전 수	수수료액	비 고
	1 - 20 월			
	21 - 50 월			
	50 월 초과			

2. 축량실적현황

별첨 양식

34-18 제496호

시 보

1975.4.18

축 량 실 적 현 황

( 월분 )

축 량 위 치				신 청 인		점 수	축 량	축 량사	필증교부	비 고
지구명	동 명	지번	BL	주 소	성 명	년월일	년월일			

<별지 제 9 호서식>

업 소 표 시 판

서 울 특 별 시

로 지 구 회 정 리 사 업 지 구 환 지

지 시 축 량 대 행 사 무 소

서 울 특 별 시

구 동 번 지

전 화 : 00 - 0000

##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45호

서울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적승인

1. 전설부고시 제198호(71.4.7)로  
일부면적 결정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용도지역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  
법 제13조의 규정과 전설부고시

제123호(73.4.4)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도시계획과와 각 해당구청 시민  
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  
다.

첨부 : 1. 도면생략  
2. 지적승인 조서  
(도면표시와 같음)

1975.4.15.

서울특별시장

## 가.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적승인조서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상업지역	중구 동자동, 용산구 갈월동, 문래동, 한강로 1, 2, 3가, 원효로 1, 2, 3가 일부지역	1,293,350 m <sup>2</sup>	

\*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서대문구청 시민봉사실  
에 보관함.

34-20 제496호

시

보 1975.4.18

## ⑥ 서울특별시 고시 제 46 호

## 도시계획시설(광장 및 도로)

## 지적 일부변경 승인

1. 전 설부고시제 49 호 (75.4.3)로  
변경 결정한 도시계획시설(광  
장 및 도로)의 지적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조와 전 설부고시 제 123호  
(73.4.4)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재  
획국 도시계획과와 서대문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4. 15.

서울특별시장

## 가. 광장지적 일부변경 승인조서

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점	26	만리동 광장	서대문구 만리동	19,572 $m^2$	면적추가
변경	"	"	"	24,150 $m^2$	(4,570 $m^2$ )

## 나. 도로지적 일부변경 승인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점	대로	2	19	28m	1,600 m	만리동 광장	공덕동 광장	
변경	"	"	"	"	1,475 m	"	"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도면은 서울시청 및 서대문구청에 보관

## ◎서울특별시고시 제 47 호

## 도시계획시설(공동구) 결정

1. 당시 여의도 관내 도시계획시설(공동구)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전설부고시 제123호(73.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4. 16.

서울특별시장

## 가. 결정조서

구분	명칭	규모	번호	연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공동구	3×2×2.5	1	3,879 m	대 3-98	광로 28 호	354m마사공
소계				3,879 "			
신설	공동구	3×2×2	2	1,061 "	대 3-31교점	대 1-30 교점	대 1-27 경유
"	"	"	3	660 "	"	"	당 28 경유
"	"	"	4	380 "	대 3-95교점	국회 의사당앞	
"	"	"	5	130 "	대 1-27교점	중 1-141	
소계				2,231 "			
합계				6,119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본체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영등포구청에 보관

34-22 제496호

시 보

1975.4.18

## ⑤서울특별시고시제 48호

도시계획시설(시내버스  
주차장) 결정 및 지적승인

1. 당시 도시계획시설(시내버스 주  
차장)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123호(73.4.4)의 권한위임사항  
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 도  
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4. 16.

서울특별시장

## 가. 주차장 시설조서

명 칭	위 치	면적	비 고
시내버스 주차장	성동구 대치동 235-3 외 2필지	895.5 평	서울여객
"	영등포구 시흥동 262 외 4 및 5	약 727 "	육성운수
"	성북구 석관동 124 외 9 및 18	736 "	상진운수
"	관악구 봉천동 343-2	304.7 "	신촌교통
"	성북구 풍곡동 211-1 외 15필지	685 "	화곡교통

※별첨 : 도면표지와 같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관할구청에 보관함。

## ◎서울특별시 고시 제 49 호

제 9 조 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서울특별시 사료성분 등록고시

다음과 같이 사료성분에 대한  
등록이 있었기 사료관리법 시행 규칙

1975. 4. 14

서울특별시장

등록 번호	공장명	소재지	대표자	사 료			사료성분량				유효 기간	비 고
				종류	명 칭	용 도	최소량	최대량	조 조 분	조 조 분		
4-101	전국베팅 사료공업 주식회사	성동구 자양동 544-7	유일운	매할	산란 중기	21-35 주	14.5	3.0	7.0	8.0		
4-102	"	"	"	사료	산란 초기	초산 20 주	15.0	3.0	7.0	13.0		
4-103	"	"	"	"	큰병아리후기	17-초산	12.0	3.0	7.5	9.0		
4-104	"	"	"	"	큰병아리 절기	13-16 주	13.0	3.0	7.5	9.0		
4-105	"	"	"	"	중령아리	7-12 주	16.0	3.0	7.0	9.0		
4-106	"	"	"	"	어린병아리	0-6 주	19.0	3.0	6.0	8.5		
4-107	"	"	"	"	산란중계	산란중계	16.0	3.0	7.0	13.0		
4-108	"	"	"	"	부리일려후기1	4 주이상	17.0	3.0	6.0	8.0		
4-109	"	"	"	"	부리일려후기2	출하 1주기 부리일려후기	16.0	3.0	6.0	9.0		
4-110	"	"	"	"	육계중계	육계중계	15.5	3.0	7.0	13.0		
4-111	"	"	"	"	젖매기송아지	2-3개월	19.0	3.0	7.0	9.0		
4-112	"	"	"	"	산란말기	36 주이상	14.0	3.0	7.0	13.0		
4-113	"	"	"	"	젖매기돼지	체중 11-20kg	3.5	6.2	8.0			
4-114	"	"	"	"	어린이돼지	2-4개월	15.0	3.0	6.0	8.0		

34-24 제 496 호

서

보

1975.4.18

등록 번호	작명	소재지	대표자	사			사료설정량	용 량	비 고		
				종류	명칭	용도	최소량	최대량	수용량		
4-115	전국애합	성동구 사료공업 주식회사	지양동 544-7	유일용	비합 사료	충제지전기 양돈용농축나로	5 - 6개월 양돈용	14.0 14.0	3.0 2.0	8.0 6.0	10.0 10.0
4-116	"	"	"	"	"	첫소중증아지	4 - 6개월	16.0	3.0	9.0	9.0
4-117	"	"	"	"	어분기초	어분기초	50.0	2.0	2.5	9.0	
4-118	"	"	"	"	부리일려전기	4주까지	19.0	3.0	6.0	8.0	
4-119	"	"	"	"	첫소큰송아지	7-18개월	13.0	3.0	10.0	11.0	
4-120	"	"	"	"	착유 1	비유량 20kg이하	13.0	3.0	10.0	11.0	
4-121	"	"	"	"	미암설운	9개월-암설	12.0	3.0	10.0	10.0	
4-122	"	"	"	"	임신전기	임신2개월까지	13.0	3.0	10.0	10.0	
4-123	"	"	"	"	육풀분기초	육풀분기초	40.0	5.0	3.0	33.0	
4-124	"	"	"	"	인삼찰술기초	인삼찰술기초	-	-	-	95.0	
4-125	"	"	"	"	양체용농축나로	양체용	16.0	2.0	4.0	12.0	
4-126	"	"	"	"	식물성박류기초	식물성박류	35.0	3.0	8.0	7.0	
4-127	"	"	"	"	기초						

## 공 고

의 규정에 의거 이에 공고함.

⑨서울특별시공고제 80호

1975.3.

공인개작공고

서울특별시장

영등포구 가리봉동과 서봉제2동의  
동장직인 및 재인이 마멸되어 개작  
사용하고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9조

개작공인 사용제시일

1975.3.10 00:00

제 496 호

시 보

1975.4.18 34-25

개인명	구 분	직 인	계 일
동명			
가리봉동			
시흥제2동			
◎서울특별시 공고 제 81 호			2.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구획정리 제 2과에 배치하고 있으니 이례문제인은 공란 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부 공고 제 9 호 (75.2.14) 로 시행인가된 서울특별시 영동 제 2지구 (추가) 토지 구획정리사업 의 인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975. 4. 15 서울특별시장

34-26 제 496 호

시 보

1975.4.18

인 가 내 용

가. 사업명: 영동제2지구(추가) 토지 구획정리 사업

나. 시행지구 및 면적: 성동구 대치동 일부

85,369 m<sup>2</sup> (25,824 평)

다. 시행자: 서울특별시장

라. 사업년도: 1975.4. - 1976.12.31.

마. 시행인가년월일: 1975. 2. 14.

바. 관계도면: 생략

◎양서출장소공고제5호

록하였기 이를 공고함.

공인개작공고

1975.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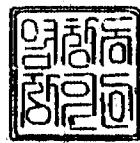
당 출장소 산하 영창동장의 직인  
이 마멸되어 폐기하고 개작 사용토

양서출장소장

1. 공인명: 영창동장의 직인
2. 사용일시: 1975.4.15 09:00
3. 공인인영:

폐기인영

개작인영



사 령		
◎ 1975.3.31	위생연구소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동대문구 지방행정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소청실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4.11.21자(발령제 955호) 징계처분(감봉1월)을 동일 자로 변경 전제에 처함.
◎ 1975.4. 7	성북구 주사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소청실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4.11.21자(발령제 955호) 징계처분(전체)을 동일자로 취소함.  성북구 주사 박우운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소청실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4.11.21자(발령제 955호) 징계처분(전체)을 동일자로 취소함.	도봉구 주사 보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소청실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4.11.21자(발령제 955호) 징계처분(감봉1월)을 동일 자로 변경 전제에 처함.  ◎ 1975.4.7 구획정리 1과 차방토목 지방공무원법 제 63조 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 1975.4. 9	회계과 주사 신우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소청실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4.11.21자(발령제 955호) 징계처분(전체)을 동일자로 취소함.	차수과 기방토목 김석기 지방공무원법 제 65조의 2 1항 1호에 의거 그 직위 를 해제함.
◎ 1975.4.10		운수 2과 과장서기관 김원경 국가공무원법 제 73 조의 2

34-28 제 496 호

시

1975.4.18

## 제 1 항 제 5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

윤 수 2 과 사무관 김재식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제 3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  
에 처함.주택행정과 지방행정 정구 험  
(윤수2과파면) 주사보 정구 험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

3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

수도관리사업소 지방기재 김명기

지방공무원법 제 63 조 1 호의

규정에 의거 휴직을 명함.

상정과 사무관 고홍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

"울지연습75" 중앙통제단

요원으로 파견 (75.4.10-

75.7.15) 근무를 명함.

관악구 지방건축 임한성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

청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74.11.26 (발령 제 966 호)

감봉 3 월 처분을 동일자로

전체에 처함.

동대문구 지방건축 최창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74.11.26 (발령 제 966 호)

전체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

양천구청소 지방건축 오세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74.11.26 (발령 제 966 호)

감봉 1 월 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

동대문구 지방건축 나영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74.11.26 (발령 제 966 호)

전체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

관악구 지방건축 오세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74.11.26 (발령 제 966 호)

감봉 6 월 처분을 동일자로 감봉

1 월에 처함.

관악구 지방건축 박춘상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74.11.26 ( 발령제 966 호 )

전체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

급수과 지방토목 기사보 정진호

복직을 명함.

3호봉을 급함.

구의수원지사 무소근무를 명함.

총무과 지방기재 기원보서보 남상감

지방기재기원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총무과 근무를 명함.

◎ 1975.4.11

예산담당관실 지방행정 주사 이석중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부 위생처리장 지방전기기사보 이중호

지방전기기사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서부위생처리장근무를 명함.

◎ 1975.4.12

기획관리관실 이사표 (기획관리관) 주용준

75.4.2-4.24 ( 13 일간 ) 까지

공무원해외여행규정에 의하여

(이란) 해외출장을 명함.

기획관리관실 서기 편 (기획담당관) 김수철

75.4.2-4.24 ( 13 일간 ) 까지

공무원해외여행규정에 의하여

(이란) 해외출장을 명함.

의약과 지방행정 주사 염정석

원에 의하여 그직을 역함.

영등포구 지방행정 주사 황용학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온평출장소 지방행정 주사 서진홍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 주사 엄수원

영동출장소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 주사보 여명우

영동출장소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 주사보 신상래

마포구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 주사 구본진

천호출장소 근무를 명함.

성북구 지방행정 주사 유수연

도봉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 주사 김수한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 주사 강대선

마포구 근무를 명함.

34-30 제 496 호

시

보 1975.4.18

서대문구	지방행정 서기보	장수봉	영등포구	지방행정 서기	이신열
용산구	근무를 명함.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 서기	김백철	영등포구	지방행정 박성희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		양서출장소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 서기보	김달수	영등포구	지방행정 신형식	
용산구	근무를 명함.		마포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 서기보	이광영	영등포구	지방행정 이광우	
관악구	근무를 명함.		관악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 서기	서진	영등포구	지방행정 이용일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 서기보	정강현	영등포구	지방행정 조성소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 서기보	최일남	체호출장소	지방행정 배우석	
성북구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행정 서기보	유현영	영등포구	지방행정 심홍섭	
마포구	근무를 명함.		체호출장소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행정 주사	지상준	마포구	지방행정 조성표	
관악구	근무를 명함.		양서출장소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행정 주사	이주연	양서출장소	지방행정 김웅수	
양서출장소	근무를 명함.		도봉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행정 주사	김영면	중구	지방행정 유창기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행정 주사	이상범	중구	지방행정 김종복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제 496 호

시      보

1975.4.18 34-31

용산구	지방행정 서기보	송남수	성북구보건소	지방행정 주사	오인환
성동구근무를 명함.			마포구	근무를 명함.	
양서출장소	지방행정 서기보	김중우	영등포구	지방행정 이도자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	
종로구	지방행정 주사보	김용찬	공무원교육원	행정주사	조종완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영동출장소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 주사	김문상	3호봉을 급함.		
중구근무를 명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은평출장소	지방행정 서기	임영식	공무원교육원	행정주사	조칠수
자동차정비사업소	근무를 명함.		영동출장소	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행정 기	양석구	1호봉을 급함.		
수도관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지방행정주사보서보에 임함.		
경리과	지방행정 주사보	현승우	공무원교육원	행정주사	박종웅
영동출장소	근무를 명함.		영동출장소	근무를 명함.	
건축과	지방행정 주사	조인혁	1호봉을 급함.		
영동출장소	근무를 명함.		지방행정주사보서보에 임함.		
사회과	지방행정 주사	장유식	은평출장소	행정주사	방금영
총무과	근무를 명함.		사회과	근무를 명함.	
보건행정과	지방행정 주사	박정순	14호봉을 급함.		
성북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사회과	지방행정 주사보	강정웅	중구	지방행정 주사	김상규
보건행정과	근무를 명함.		세마을노임소득사업추진본부	파전을명함.	
어린이재활원	지방행정 주사보	이승우	동대문구	지방행정 김정웅	
관리사무소	근무를 명함.		세마을노임소득사업추진본부	파전근무를 명함.	

34-32 제 496 호

시

공무원교육원 행정주사 이웅기	문화광보실 파견근무를 명함.
취호출장소 지적기사 박홍모	중구 근무를 명함.
중 구 지적기사 김주복	취호출장소근무를 명함.
설동구 지방농림 기사	설동구 지방농림 성현영
취호출장소 근무를 명함.	취호출장소 근무를 명함.
취호출장소 지방농림 기사보	성동구 근무를 명함.
방호담당관실 지방건축 기사보	방호담당관실 지방건축 척종성
관 악 구	건축과 근무를 명함.
방호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관 악 구 지방건축 전인호
우동장	지방기체 기원보
도봉구 근무를 명함.	왕규철
영동포	지방토목 김필교
수원지사무소 기사	영동포구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토목 강판근
취호출장소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지방토목 한규섭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기사보
성북구	지방토목 김영세
도시가스사업소	기사보
	도시가스사업소 근무를 명함.

보 1975.4.18

역청사업소 지방토목 김광조	기사보
성북구 근무를 명함.	도봉구 지방토목 이창석
	역청사업소 근무를 명함.
	영동포구 지방토목 김경봉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관악구 지방기체 현병호
	역청사업소 근무를 명함.
	영동포구 지방토목 서기석
	영동포수원지사무소 근무를 명함.
	양서출장소 지방토목 박혁근
	관악구 근무를 명함.
◎ 1975.4.14	
	시민과 지방행정주사 권원상
	운수2과 유기로
	운수3과 지방행정주사보 이만용
	차량(운송)동원요원으로 운수
	1파과전(75.4.14-5.14)
	근무를 명함.
	수원과 지방토목 구돈희
	(설비개량계장) 기자좌 하수과 하수시설계장에 보함.
	토목시험소 지방토목 최재범
	(물리과장) 기자보
	수원과 설비개량계장에 보함.
	하수과 (하수시설계장 지방토목 서의석
	(직무대리) 기사
	토목시험소 물리과장직무대리 토명함.

◎ 1975. 4. 15

성동구 지방행정 확보 윤  
주사보  
하수과(천호제축조공사)

파견근무를 해제함.

중구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행정 이첨  
서기

중구근무를 명함.

부녀과 지방행정 정연숙  
주사보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기전과 지방기계 이시완  
(과장자무대리) 기계정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1호, 4호에 의거

그직위를 해제함.

토목시험소 지방화공 김수선  
기사보시보

지방화공기사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토목시험소 근무를 명함.

◎ 1975. 4. 16

동대문구 지방건축 이동주  
양서출장소

건축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도로시설과장 토목기정 이민창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 1975. 4. 17

영동포구 지방건축 이원훈  
건축과 근무를 명함.

아비출장소 (건축과장)  
(직무대리) 지방건축 이종환  
은평출장소

건축과장직무대리를 명함.

은평출장소 (건축과장)  
(직무대리) 지방건축 이원준  
영동포구

건축과장직무대리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토목 지영복  
기원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 2호에 의거

하여 감봉 1월에 처함.

동대문구 지방토목 안상명  
기원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 2호에 의거

하여 감봉 1월에 처함.

성북구 지방토목 전창일  
기원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 2호에 의거

하여 견책에 처함.

<p>증구보건소 지방행정부 박영철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제 1, 2, 3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p> <p>시민과 주거 행정사 박성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4.12.9(발령제 994호) 징계처분(전체)을 동일자로 취소함.</p> <p>성북구 주사로 박영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4.12.19(발령제 1011호) 징계처분(감봉 3월)을 동 일자로 변경 감봉 1월에 처함.</p>	<p>수원과 경기도에 진안 원에 위하여 그치를 연합. 기전과 기상보 긴상우 복장을 명함. 2호봉을 급함. 기전과 근무를 명함.</p> <p>지하철본부 지방철도 원(9동급) 흥성면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74.12.10(발령 제 995호) 징계처분(파 면)을 동일자로 변경, 감봉 6월에 처함.</p>
---	---

서울특별시장